

공시송달서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 및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

2. 청문대상

사업의 종류	업체명	대표자	주 소
항만하역업	미래해운(주)	이규현	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10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

사업의 종류	업체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	법적 근거
항만하역업	미래해운(주)	사업수행실적 없음 (항만운송사업법 2차 위반)	등록취소	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
4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

- 가. 의견은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의견제출서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(붙임 제1호 서식 참조)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
- 다. 다만,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「행정 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.(전화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)
- 라.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 방법

- 가.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(방문·우편·팩스),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,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또는 우편 :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
 - 팩스 : 041-663-0348
 - 정보통신망 : garlic6@korea.kr
- 나. 우편, 팩스,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(전화041-660-7653)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다.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.(신분증 지참)

6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당사자 등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
 -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
 - 변호사
 -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
 -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
- 나.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, 「행정절차법 시행 규칙」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(붙임 제2호 서식 참조)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다. 당사자 등이 대표자(대리인)를 선정(선임)하였을 때에는 「행정절차법 시행 규칙」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(붙임 제3호 서식 참조)에 따라 대표자 선정·대리인 선임 사실을 자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라. 당사자 등이 대표자(대리인)를 해임(변경)하였을 때에도 「행정절차법 시행 규칙」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(붙임 제4호 서식 참조)에 따라 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사실을 자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
7. 의견제출 기한 : 2024. 3. 19.(화)까지

8. 기타사항

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,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·회사사정 등으로 사업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전화 041-660-7654, 임민주)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

붙임 1. 청문실시통지서 1부.

2. 의견제출서 1부

3.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

4.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

5. 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통지서 1부. 끝.

[붙임 1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대산지방해양수산청

수신자 (주)미래해운 대표 이규현
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(안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 및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9조의3제2호에 따라 우리 기관이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등록취소 등 행정처분		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(주)미래해운 대표 이규현							
	주 소	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10		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전년도 사업수행실적 없음(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폐업상태)		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업) 등록취소		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(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) 별표 5								
청문실시	기관명	대산지방해양수산청	부서명	항만물류과	담당자				
	주소	충남 서산시 홍천로 42			전화번호				
	일시	2024년 3월 19일(화) 14시 부터 15시 까지(1시간)			장소				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						
		성명	김 기 남				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게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직인

[불임 2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*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 :)
의견	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二〇一〇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 × 297mm [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]

[붙임 3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일	
신청인	성명 주소		
		전화번호	
신청 내용	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등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 :)	
	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 :)	생년월일
당사자등과의 관계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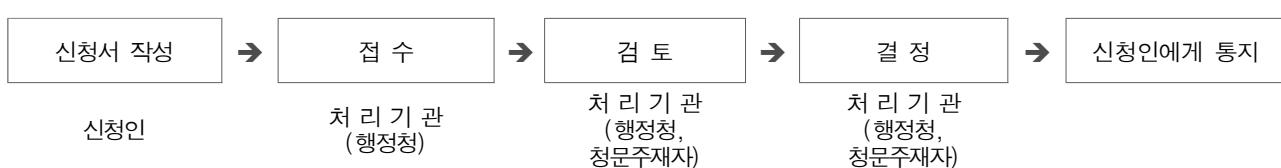
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 절차



*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[붙임 4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[] 대표자선정
[] 대리인선임 통지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통지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통지 내용	① 대표(대리)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등	성명(명칭)	
		주소	
	대표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	생년월일
		주소	(전화번호 :)
당사자등과의 관계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통지인

(서명 또는 인)

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-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[붙임 5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[] 대표자
[] 대리인 ([] 해임 [] 변경) 통지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통지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통지 내용	① 대표(대리)한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 등	성명(명칭)	
		주소	
	해임(변경)된 대표자 (대리인)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	생년월일
		주소	(전화번호:)
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사유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통지인

(서명 또는 인)

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-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